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및근거
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지침 제1편 : 방재편 제2장 도로터널 방재시설 2.1 일반사항 <해당없음>	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지침 제1편 : 방재편 제2장 도로터널 방재시설 2.1 일반사항 <u>2.1.7 침수 시 대응계획</u>	<현행 동일> <현행 동일> <현행 동일> <현행 동일> - 지침 내 침수시 대응계획 추가에 따른 긴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
<해당없음>	(1) <u>도로관리청은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에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차도 이용자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<신설></u>	- 상동
<해당없음>	(2) <u>도로관리청은 관심-주의-경계-심각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수립하고, 지하차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신설></u>	- 상동
<해당없음>	(3) <u>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여 유관 기관(경찰, 소방 등)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, 기관별 역할을 정하여야 한다.<신설></u>	- 상동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및근거
〈해당없음〉	(4) <u>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통제에 대비하여 도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우회도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></u>	- 상동
〈해당없음〉	(5) <u>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의 침수이력, 홍수위험 지도, 침수예상도, 하천 등 주변 인접지역에서 유입사항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.<신설></u>	- 상동
〈해당없음〉	(6) <u>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(상·하행 각 1명)하여 각 단계별로 업무를 정하여야 한다.<신설></u>	- 상동
〈해당없음〉	(7) <u>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침수심, 주변 하천 수위, 시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최대침수심은 15cm이하로 한다.<신설></u>	- 상동
〈해당없음〉	(8) <u>도로관리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입 차단설비를 즉시 작동하여 도로를 통제하여야 한다.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통제를 위해 라바콘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, VMS 전광판에 교통 통제 및 우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신설></u>	- 상동
〈해당없음〉	① <u>배수펌프가 미작동하거나, 처리용량을 초과</u>	- 상동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및근거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해당없음></p> <p><해당없음></p> <p><해당없음></p>	<p><u>하여 지하차도 내에 물이 고이거나, 증가하는 경우(수위계, CCTV, 현장 확인 등)<신설></u></p> <p>② <u>홍수특보(주의보, 경보) 발령 등으로 홍수통제소, 하천관리청 등으로부터 하천범람 우려가 있다고 통보된 경우<신설></u></p> <p>③ <u>해당 지자체, 경찰, 기상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경우<신설></u></p> <p>④ <u>기타 도로관리청이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<신설></u></p>	<p>- 상동</p> <p>- 상동</p> <p>- 상동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u>2.1.7</u> 터널관리자 교육</p> <p>2.3 방재시설 설치계획</p> <p>2.3.3 연장등급·방재등급별 설치계획</p> <p><표 1.2.3(a)>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(일반 도로터널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81 1302 965 1390"> <tr> <td></td> <td>터널등급</td> <td>1등급</td> <td>2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4등급</td> <td rowspan="2">비고</td> </tr> <tr> <td>방재시설</td> <td></td> <td>급</td> <td>급</td> <td>급</td> <td>급</td> </tr> </table>	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방재시설		급	급	급	급	<p><u>2.1.8</u> 터널관리자 교육</p> <p>2.3 방재시설 설치계획</p> <p>2.3.3 연장등급·방재등급별 설치계획</p> <p><표 1.2.3(a)>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(일반 도로터널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25 1302 1809 1390"> <tr> <td></td> <td>터널등급</td> <td>1등급</td> <td>2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4등급</td> <td rowspan="2">비고</td> </tr> <tr> <td>방재시설</td> <td></td> <td>급</td> <td>급</td> <td>급</td> <td>급</td> </tr> </table>	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방재시설		급	급	급	급	<p>2.1.7 침수 시 대응계획 신설에 따른 번호이동</p> <p><현행 동일></p> <p><현행 동일></p> <p>- 터널진입차단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에 따른 개정</p>
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방재시설		급	급	급	급																							
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방재시설		급	급	급	급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			개정안						개정사유및근거					
방재시설	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방재시설		터널등급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
소화설비	소화기구		●	●	●	●			소화설비	소화기구		●	●	●	●		
	옥내소화전설비		●	●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		옥내소화전설비		●	●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
	물분무설비		○							물분무설비		○					
경보설비	비상경보설비		●	●	●				경보설비	비상경보설비		●	●	●			
	자동화재탐지설비		●	●						자동화재탐지설비		●	●				
	비상방송설비		○	○	○					비상방송설비		○	○	○	△ ⁽⁵⁾		
	긴급전화		○	○	○					긴급전화		○	○	○			
	CCTV		○	○	○	△	△: 200m 이상 터널			CCTV		○	○	○	△	△: 200m 이상 터널 또는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되는 BOX형 지하차도	
	자동사고감지설비		△	△	△					자동사고감지설비		△	△	△			
	재방송설비		○	○	○	△	△: 200m 이상 터널			재방송설비		○	○	○	△	△: 200m 이상 터널	
	정보표지판		○	○						정보표지판		○	○	△ ⁽⁵⁾	△ ⁽⁵⁾		
	진입차단설비		○	○						진입차단설비		○	○	○ ⁽⁵⁾	○ ⁽⁵⁾		

현행						개정안						개정사유및근거					
방재시설	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방재시설		터널등급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
피난 대피 설비	대피시설	비상조명등	●	●	●	△	△: 200m 이상 터널		대피시설	비상조명등	●	●	●	△	△: 200m 이상 터널		
		유도등	○	○	○	○ ⁽⁴⁾	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 ⁽⁴⁾			유도등	○	○	○	○ ⁽⁴⁾	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 ⁽⁴⁾		
	대피시설	피난연결통로	●	●	●	● ⁽⁴⁾	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⁽⁴⁾		대피시설	피난연결통로	●	●	●	● ⁽⁴⁾	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⁽⁴⁾		
		피난대피터널 ⁽¹⁾	●	△			1등급: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			피난대피터널 ⁽¹⁾	●	△			1등급: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		
		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⁽¹⁾	△	●	●	● ⁽⁴⁾	2등급: 격벽분리형 피난대피 통로를 우선 적용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⁽⁴⁾			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⁽¹⁾	△	●	●	● ⁽⁴⁾	2등급: 격벽분리형 피난대피 통로를 우선 적용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⁽⁴⁾		
		피난대피소 ⁽¹⁾	삭제							피난대피소 ⁽¹⁾	삭제						
	비상주차대	○	○					비상주차대	○	○							
소화 활동 설비	제연설비	○	○	◎	◎	<삭 제>		소화 활동 설비	제연설비	○	○	◎	◎	<삭 제>			
	무선통신보조설비	●	●	●	△ ⁽²⁾				무선통신보조설비	●	●	●	△ ⁽²⁾				
	연결송수관설비	●	●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		연결송수관설비	●	●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		
	(비상)콘센트설비	●	●	●					(비상)콘센트설비	●	●	●					
비상 전원 설비	무정전전원설비	●	●	●	△ ⁽³⁾			비상 전원 설비	무정전전원설비	●	●	●	△ ⁽³⁾				
	비상발전설비	●	●	△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		비상발전설비	●	●	△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		

현행						개정안						개정사유및근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방재시설</th> <th>터널등급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th>4등급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급</th> <th>급</th> <th>급</th> <th>급</th> </tr> </thead> </table> <p>● 기본시설 : 연장등급에 의함 ○ 기본시설 : 방재등급에 의함 △ 권장시설 :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◎ 보강설비 : 운영중 연장3등급 및 연장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</p> <p>(1)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(2) 4등급 터널의 경우,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(3)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(4)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</p> <p><표 1.2.3(b)>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(소형차 전용터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방재시설</th> <th>터널등급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th>4등급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등급</th> <th>등급</th> <th>등급</th> <th>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소화설비</td> <td>소화기구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옥내소화전설비</td> <td>● ○</td> <td>● 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</td> </tr> <tr> <td>원격제어살수설비</td> <td></td> <td>△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2등급 이상, 3,000m 이상</td> </tr> <tr> <td>물분무설비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방재시설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비고		급	급	급	급	방재시설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등급	등급	등급	등급	소화설비	소화기구	●	●	●	●		옥내소화전설비	● ○	● ○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원격제어살수설비		△			2등급 이상, 3,000m 이상	물분무설비	○		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방재시설</th> <th>터널등급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th>4등급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급</th> <th>급</th> <th>급</th> <th>급</th> </tr> </thead> </table> <p>● 기본시설 : 연장등급에 의함 ○ 기본시설 : 방재등급에 의함 △ 권장시설 :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◎ 보강설비 : 운영중 연장3등급 및 연장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</p> <p>(1)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(2) 4등급 터널의 경우,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(3)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(4)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(5) 4.9.3 설치지침 (9)에 따라 3등급 및 4등급 BOX형 지하차도에 적용함</p> <p><표 1.2.3(b)>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(소형차 전용터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방재시설</th> <th>터널등급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th>4등급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등급</th> <th>등급</th> <th>등급</th> <th>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소화설비</td> <td>소화기구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옥내소화전설비</td> <td>● ○</td> <td>● 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</td> </tr> <tr> <td>원격제어살수설비</td> <td></td> <td>△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2등급 이상, 3,000m 이상</td> </tr> <tr> <td>물분무설비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방재시설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급	급	급	급	방재시설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등급	등급	등급	등급	소화설비	소화기구	●	●	●	●		옥내소화전설비	● ○	● ○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원격제어살수설비		△			2등급 이상, 3,000m 이상	물분무설비	○				
방재시설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급	급	급	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재시설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등급	등급	등급	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화설비	소화기구	●	●	●	●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옥내소화전설비	● ○	● ○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원격제어살수설비		△			2등급 이상, 3,000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물분무설비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재시설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급	급	급	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재시설	터널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등급	등급	등급	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화설비	소화기구	●	●	●	●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옥내소화전설비	● ○	● ○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원격제어살수설비		△			2등급 이상, 3,000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물분무설비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			개정안						개정사유및근거	
방재시설		터널등급				비고	방재시설		터널등급				비고
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
정보 설비	비상경보설비	●	●	●			비상경보설비	●	●	●			
	자동화재탐지설비	●	●				자동화재탐지설비	●	●				
	비상방송설비	○	○	○			비상방송설비	○	○	○	△ ⁽⁵⁾		
	긴급전화	○	○	○			긴급전화	○	○	○			
	CCTV	○	○	○	△	△: 200m 이상 터널	CCTV	○	○	○	△	△: 200m 이상 터널 또는 <u>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되는 BOX형 지하차도</u>	
	자동사고감지설비	△	△	△			자동사고감지설비	△	△	△			
	재방송설비	○	○	○	△	△: 200m 이상 터널	재방송설비	○	○	○	△	△: 200m 이상 터널	
	정보표지판	○	○				정보표지판	○	○	△ ⁽⁵⁾	△ ⁽⁵⁾		
	<u>진입차단설비</u>	○	○				<u>진입차단설비</u>	○	○	○ ⁽⁵⁾	○ ⁽⁵⁾		
	비상조명등	●	●	●	△	△: 200m 이상 터널	비상조명등	●	●	●	△	△: 200m 이상 터널	
피난 대피 설비	유도등	○	○	○	○ ⁽⁴⁾	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 ⁽⁴⁾	유도등	○	○	○	○ ⁽⁴⁾	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 ⁽⁴⁾	
	대 피 시 설	피난연결통로	●	●	●	● ⁽⁴⁾	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⁽⁴⁾	피난연결통로	●	●	●	● ⁽⁴⁾	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⁽⁴⁾
		피난대피터널 ⁽¹⁾	●	△			1등급: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	피난대피터널 ⁽¹⁾	●	△			1등급: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
		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⁽¹⁾	△	●	●	● ⁽⁴⁾	2등급: 격벽분리형 피난대 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⁽⁴⁾	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⁽¹⁾	△	●	●	● ⁽⁴⁾	2등급: 격벽분리형 피난대 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⁽⁴⁾
	비상주차대	○	○				비상주차대	○	○				

현 행

방재시설		터널등급				비 고
		1 등급	2 등급	3 등급	4 등급	
소화 활동 설비	제연설비	○	○			
	무선통신보조설비	●	●	●	△ (2)	
	연결송수관설비	○	○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
	(비상)콘센트설비	●	●	●		
비상 전원 설비	무정전전원설비	●	●	●	△ (3)	
	비상발전설비	○	○	△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

- 기본시설 : 연장등급에 의함 ○ 기본시설 : 방재등급에 의함
 △ 권장시설 :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
- (1)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
 - (2) 4등급 터널의 경우,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
 - (3)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
 - (4)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

4.9 터널진입차단설비

4.9.1 일반사항

- (1) 터널진입차단설비는 터널 내 **화재 시**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설한다.

개 정 안

방재시설		터널등급				비 고
		1 등급	2 등급	3 등급	4 등급	
소화 활동 설비	제연설비	○	○			
	무선통신보조설비	●	●	●	△ (2)	
	연결송수관설비	○	○	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
	(비상)콘센트설비	●	●	●		
비상 전원 설비	무정전전원설비	●	●	●	△ (3)	
	비상발전설비	○	○	△		연장등급, 방재등급 병행

- 기본시설 : 연장등급에 의함 ○ 기본시설 : 방재등급에 의함
 △ 권장시설 :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
- (1)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
 - (2) 4등급 터널의 경우,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
 - (3)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
 - (4)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
 - (5) 4.9.3 설치지침 (9)에 따라 3등급 및 4등급 BOX형 지하차도에 적용함

4.9 터널진입차단설비

4.9.1 일반사항

- (1) 터널진입차단설비는 터널 내 **교통사고, 화재, 침수 등 긴급상황 시**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.

개정사유및근거

- <현행 동일>
 <현행 동일>
 - 터널진입차단설비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화재 뿐 아닌 교통사고,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및근거
<p>4.9.3 설치지침</p> <p><해당없음></p> <p><해당없음></p> <p><해당없음></p>	<p>4.9.3 설치지침</p> <p><u>(9) 방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지하차도(종단 선형이 U자형인 경우에 한한다)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.<신설></u></p> <p><u>① 「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」(행안부고시) 제2조 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지하차도가 위치한 경우<신설></u></p> <p><u>② 지하차도 시·중점부(U-타입)에서 인근 하천구역(「하천법」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,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말한다)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500m 이내의 경우<신설></u></p>	<p>침수 등 긴급 상황 추가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정</p> <p><현행 동일></p> <p>- 방재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중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에 터널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용 신설</p> <p>- 상동</p> <p>- 상동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및근거
<p data-bbox="488 197 663 236"><해당없음></p> <p data-bbox="499 443 656 481">이하 생략</p> <p data-bbox="192 512 450 550">제2편 : 환기편</p> <p data-bbox="506 580 663 619">이하 생략</p> <p data-bbox="192 649 490 687">제3편 : 행정사항</p> <p data-bbox="192 718 398 756">1. 유효기간</p> <p data-bbox="199 794 972 1008">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0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 data-bbox="192 1038 322 1077">부칙</p> <p data-bbox="199 1107 967 1145">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data-bbox="199 1176 972 1406">제2조(경과조치) ① 본 예규의 발령 전에 공사 중인 터널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설계 중이거나 착공 전 터널은 본 예규를 적용하여야 한다.</p>	<p data-bbox="1061 197 1800 416"><u>③ 지하차도 주변의 지형 특성, 시설물 현황,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<신설></u></p> <p data-bbox="1323 443 1480 481">이하 생략</p> <p data-bbox="1019 512 1276 550">제2편 : 환기편</p> <p data-bbox="1330 580 1487 619">이하 생략</p> <p data-bbox="1019 649 1317 687">제3편 : 행정사항</p> <p data-bbox="1019 718 1225 756">1. 유효기간</p> <p data-bbox="1025 794 1798 1008">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6년 12월 31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 data-bbox="1019 1038 1149 1077">부칙</p> <p data-bbox="1370 1107 1447 1145">좌동</p> <p data-bbox="1025 1176 1798 1453">제2조(경과조치) ① 설계 중이거나 착공 전 터널은 이 예규를 적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예규의 발령 전에 공사 중인 터널은 <u>매몰 비용 및 잔여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</u>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 data-bbox="1823 197 1928 236">- 상동</p> <p data-bbox="1854 512 2040 550"><현행 동일></p> <p data-bbox="1854 649 2040 687"><현행 동일></p> <p data-bbox="1823 718 2076 858">- 지침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수정</p> <p data-bbox="1854 1038 2040 1077"><현행 동일></p> <p data-bbox="1854 1107 2040 1145"><현행 동일></p> <p data-bbox="1823 1176 2076 1473">- 감사원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적용을 위해 개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및근거
<p>② 이미 운영(본 예규 이전에 건설되어 공용) 중인 터널은 본 예규의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대책수립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 중인 터널 중 본 예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‘건설기술진흥법’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본</u>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통 이후 4년 이상 경과한 공용중인 터널은 제1편6.1.6.(2)①의 규정에 따라 최초 수행주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</p>	<p>좌동</p> <p>③ <u>중전</u> 예규 시행일(2021.12.02.)을 기준으로 개통 이후 4년 이상 경과한 공용중인 터널은 제1편6.1.6.(2)①의 규정에 따라 최초 수행주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이 예규 개정</u>에 따라, <u>운영중인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즉시 침수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,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현행 동일></p> <p>- 제연설비 성능 검증 완료시기 관련 명확화를 위해 개정</p> <p>-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대처를 위해 신설</p>